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4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완화	2
2.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완화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4. 12. 5.
3.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 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또는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에게(그 외의 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완화

개정안은 현행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으로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5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시 구성원수가 <u>100인</u> 이상일 것	4. ----- <u>50명</u> -----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음¹⁾.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거나 정부·지자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²⁾³⁾).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소규모이지만 내실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단순히 구성원 수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등록 단체의 운영 투명성, 지속 가능성, 공익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구성원 기준만 완화되는 경우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부실 단체의 등록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규모가 작지만 내실있게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모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내실있게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가려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구성원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100인 등록 요건이 단체 운영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므로 이를 완화할 경우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부실 단체의 증가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2023년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1,195개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등록된 단체 중 7424개(66.3%)만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2,809개(25.1%) 단체가 주소지 부재·활동 없음 등이 확인되어 직권말소의 대상이거나 자진말소를 희망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말소대상) 3,771개		
		직권말소	자진말소	말소검토 등
11,195개 (100%)	7,424개 (66.3%)	1,948개 (17.4%)	861개 (7.7%)	962개 (8.6%)

*자료 : 행정안전부

2.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완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게 위해서는 ①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②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가 있어야 함.

개정안은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1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사무소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u>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u>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u>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u>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등록) ①----- -----<u>다</u> <u>음 각 호의 자에게</u>----- -----<u>자</u>는----- -----. 1. <u>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비영리민간단체</u>

<u><신 설></u> ② (생 략)	<u>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 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1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u> <u>2.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 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 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 그 외의 비영리민간 단체</u>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비영리민간단체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문화·온라인화 되어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을 보다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지역에 국한된 활동만을 하거나, 온라인 위주의 활동을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광역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중앙부처 등록의사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한 단체 중 75%가 등록 요건이 완화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겠다고 응답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⁴⁾.

또한, 광역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광역시·도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등록 변경 사례가 증가하여 지역 단위의 공익활동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등록 단체가 증가하면 광역시·도의 공익활동 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4)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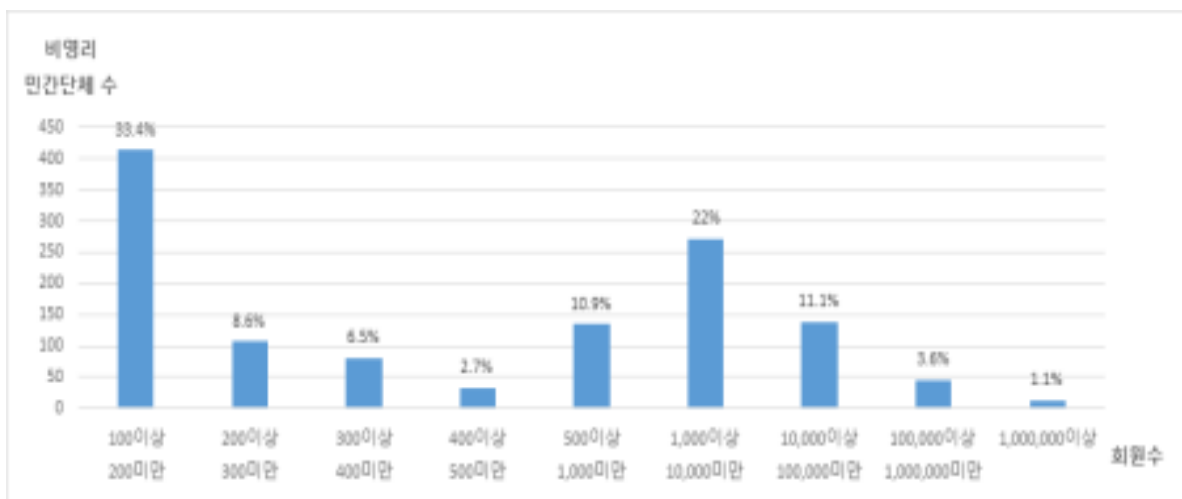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 1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수 및 중앙부처 등록 희망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 수 현황(중앙부처 등록 1,238개 비영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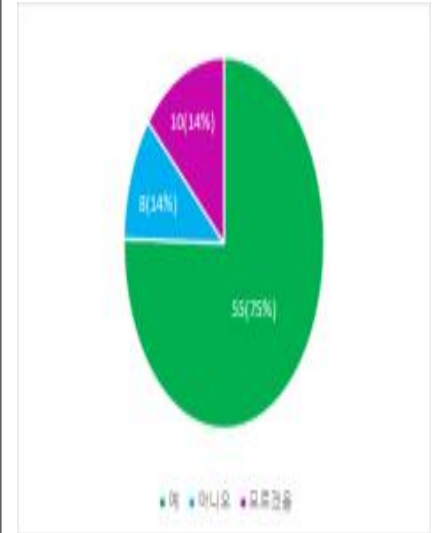
- 100~200명 회원 보유한 단체는 414개 단체(33.4%)
- 1,000명 이상 회원 보유한 단체는 468개 단체(37.8%)
- 200~1,000명 회원 보유한 단체는 356개 단체(28.7%)

< 비영리민간단체별 회원 수 보유 현황 >



□ 광역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중앙부처 등록의사 설문결과

- (설문사항) 중앙행정기관 등록요건 중 기존의 사업범위가 2 이상 광역시·도에 걸쳐있는 것은 동일하되,
 - 단체 사무소를 광역시·도 1곳에만 설치해도 가능토록 완화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의사 여부
- 설문결과(72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54개 단체(75%)
 - (광역시·도에 등록) 8개 단체(11%)
 - (모르겠음) 10개 단체(14%)



참고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24.6.30.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단위 : 개)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3,943	1,475	12,468
증 22 (2024. 3. 31. 대비)	증 0 (2024. 3. 31. 대비)	증 22 (2024. 3. 31. 대비)

○ 중앙행정기관 등록현황

(단위 : 개)

계	국가인권 위 원 회	방송통신 위 원 회	인 사 혁신처	식품의약 품안전처	공정거래 위원회	금 융 위원회	국민권익 위 원 회	기 획 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475	1	5	2	1	9	4	1	7	46	14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 정 안전부	국 가 보훈부	문화체육 관 광 부	농림축산 식 품 부	산업통상 자 원 부	보 건 복지부
	121	180	9	30	223	12	179	38	12	175
	환경부	고 용 노동부	여 성 가족부	국 토 교통부	해 양 수산부	중소벤처 기 업 부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170	36	101	6	27	2	1	1	9	8
	국 가 유산청	농 촌 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 양 경찰청	질 병 관리청			
	7	5	19	2	1	9	2			

○ 지방자치단체 등록현황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468	1,846	819	364	772	700	551	354	38	2,31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양	수원	용인	창원
	381	418	493	1,060	594	614	783	364	1	1	1	4